<사회보장정보 Brief 제19호> 2018년 9월 18일

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:
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·재산 조사를 중심으로

한은희 부연구위원
(☎02-6360-4673)

1. 들어가며

-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임.
- 오는 9월 21일부터 만 6세 미만(0~71개월) 아동 가구 중 경제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에서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임.
-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10%를 거르기 위한 선정 기준이 산정되어야 하고, 아동수당 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.
  - 본 고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살펴보고자 하며,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·재산 조사의 절차를 검토하고자 함[1)]

2.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

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

- 만 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'주민등록법'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짐.

소득 및 재산 기준

-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 함.
- 소득인정액은 '소득평가액'과 '재산의 소득환산액'의 합
  -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제외한 금액임.
  - 소득 공제: 다자녀 양육비 공제(2자녀부터 1인당 65만원), 맞벌이 공제 (맞벌이 가구의 근로·사업 소득의 25%)
  -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총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12.5%(월 1.04%)을 곱한 금액임.
  - 기본재산액 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, 지역 간 주거비용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대도시는 13,500만원, 중소도시는 8,500만원, 그리고 농어촌은 7,250만원을 공제함.
-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<표 1> 과 같음

<표 1>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

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소득인정액 기준	월1,170만 원	월1,436만 원	월1,702만 원
재산만 있는 경우	11.2억원	16.3억원	18.9억원

  - 6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, 가구원 1인 추가 시 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함.
-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"2인 이상 전체 가구 중에서 100분의 90 이하"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아동 가구의 약 95%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됨[2)].

3.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절차

아동수당 신청 및 대상 선정 절차

-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이며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.
  - 신청 시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,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함.
-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, 복지로 웹사이트, 또는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.

(2 페이지 계속)

1) 본 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발행한 「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」중 일부 내용을 발췌·요약하였음
2) 보건사회연구원「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: 아동수당 선정기준(안) 발표」 자료집 참고(2018.04.09.)

●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절차는 [그림 1]과 같음.

[그림 1]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절차

● 아동수당 신청자 중 조사 면제자 결정, 소득·재산조사를 위한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조회 요청,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이루어짐.

소득·재산 조사 개요

●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는 소득·재산 조사 대상자로 구성됨. 즉,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인 아동 및 그 보호자와 가구원(아동의 부모, 형제자매 등)임.

-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아동과 부모, 아동의 형제자매는 가구원으로 포함함.
- 이혼 가정인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와 형제·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하지만,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부모의 배우자 및 그 자녀 포함함.

● 소득·재산 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(통보)된 공적자료가 우선적으로 적용됨.

- 보유 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·확인 후 반영 함.
- 행복e음에 의한 소득·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를 수정하도록 한 후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수정 결과를 적용함.

● 기존 복지급여의 소득·재산 조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급자는 아동 수당의 소득·재산 조사가 면제 됨.

- 구체적으로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,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입양대기아동,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, 한부모지원, 차상위지원, 초중고 교육비 지원, 국토부 임대주택사업 수급가구 등

※ 소득·재산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신청은 반드시 필요

● **소득재산 자동판정:** 공적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.재산(부채는 반영하지 않음)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% 이하(예, 3인 가구 819만원, 4인 가구 1,005만원)이면 소득.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종결할 수 있음.

- 공적자료가 부족하거나 소득·재산 누락 가능성이 있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판정에서 제외 함.

4. 나가며

●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 산정방식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, 소득·재산 조사 등 지급 대상 선정 절차에 필요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.

● 이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소득·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과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관련조사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행복e음을 통한 소득·재산 자동판정을 시도하고 있음.

●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신청 전에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'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'를 통해 아동수당 수령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음.

- 단, 본인이 알고 있는 소득·재산 정보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의 계산결과와 신청 후 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음.